피부양자 등재

[] 제외 [] 제외해제

신고서

성명	성명		생년월일
등재거부(거부해제) 사유			
유의사항		피부양자 등재제외 신청 시 제외해제 신청 전까지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불가합니다.	

본인은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2조(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)에도 불구하고, 위와 같이 피부양자 등재제외 대상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재 제외 · 제외해제를 신청하며, 추후 등재제외 신청을 해제할 경우 해제한 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여도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.

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연락처

- ※ 피부양자(당사자)가 아닌 제3자는 피부양자 등재제외 및 해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- ※ 신청인은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

국민건강보험공단 ○○ 지사장 귀하